

목포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(안)

의안 번호	8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2. 7. .
제출자 : 목포시장

1. 제안사유

목포 도시계획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변경결정 사유

- 목포권 농수산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구조의 개선,
- 하당 신도심에 입지한 상동 도매시장의 외곽 이전으로 신도심 토지이용효율화와 도매시장 규모 및 설비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.

3. 변경결정 추진경위

가. 1차후보지 선정

- 위치 : 목포시 석현동 1044번지 일원
- 면적 : 19,432㎡(생산녹지 지역)
-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
 - 주민공람공고 : 2001. 8. 24 ~ 9.6(14일간) - 의견없음
 - 시의회 의견청취 : 2001. 9. 21- 원안가결
 -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: 2001. 9. 25 - 원안자문
 -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: 2001. 12. 26 - 조건부 의결
 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예방을 위해 편입부지의 80%이상 매입 또는 동의후 설치
 - 대책 : 편입부지의 80%이상 동의서 징구가 불가능 하므로 제2후보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결정(도매법인)

나. 2차후보지 선정

- 위 치 : 목포시 석현동 1086-1번지 일원
- 면적 : 16,003m²(생산녹지 지역)
-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
 - 토지소유자 동의 징구 : 2001. 12 ~ 2002. 3 (동의율 82. 3%)
 - 주민공람공고 : 2002. 5. 16 ~ 5. 29 - 의견없음

4. 도시계획 변경 내용

- 용도지역
 - 생산녹지지역 → 자연녹지지역 : 16,003m²
- 도시계획시설
 - 시장(농수산물 도매시장) 신설 : 16,003m²
 - 도로 신설 1개소 : 중로1류, 연장 135m 폭 20m

5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용도지역 총괄표

구	분	면 적 (m ²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	계	78,236,000		78,236,000	100.0	
주 거 지 역		12,243,041		12,243,041	15.6	
상 업 지 역		2,042,698		2,042,698	2.7	
공 업 지 역		6,665,503		6,665,503	8.5	
녹 지 지 역		32,018,119		32,018,119	40.9	
	자연 녹지 지역	30,771,369	증) 16,003	30,787,372	39.3	
	생 산 녹지 지역	1,246,750	감) 16,003	1,230,747	1.6	
미 지 정 지 역		25,266,639		25,266,639	32.3	

나.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 (㎡)	변 경 사 유
		기 정	변 경		
1	석현동 1086-1번지일원	생산 녹지 지역	자연 녹지 지역	16,003	현재의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매시장 입지 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

6. 시장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시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	기 정	증·감	변 경	
신설	5	농수산물 도매시장	석 현 동 1086-1번지 일원	-	증)16,003	16,003	

나. 시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세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5	농수산물 도매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설 ◦ 면적 : 16,003㎡ ◦ 위치 : 석현동 1086-1번지 일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목포권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, 하 당신도심에 입지한 상동도매시장의 외곽 이전 으로 신도심 토지이용 효율화 도 모와 시장 규모 및 설비의 선진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 유도

7.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규 모				사 용 형 태	기 능	연 장	시 점	중 점	주 요 경 과 지	비 고
	등 급	류 별	번 호	폭 원							
신설	중로	1	51	20	일반도로	집산도로	135	대1-3	농수산물 도매시장		

나.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중로 1-5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노선신설 ◦ 폭원 : 20m ◦ 면적 : 3,530m²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설에 따른 이용객 및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

8. 참고사항

주민의견청취

- 공람기간 : 2002. 5. 16~2002. 5. 29
- 신문광고 : 지방일간지 2개사(전남매일, 호남신문)
- 의견내용 : “의견없음”